###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4713 제출연월일: 2024. 10. 16.

제 출 자:정 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인가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공사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의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 법률 제 호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 및 제5호 중 "인가를"을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인가의 취소 등) 환경부장	제17조(인가의 취소 등)
관은 하 · 폐수처리수 재이용사	
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	
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인가를</u> 받은 하·폐수처리수	4. <u>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를</u>
재이용사업의 하 · 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공사시작 예	
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	
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	
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5. <u>인가를</u> 받은 온배수 재이용	5.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를
사업의 온배수 재이용시설 설	
치 공사시작 예정일부터 1년	
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	
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	

공하지 ㅇ	ㅏ니한	경우
-------	-----	----

\_\_\_\_\_